

이 자료는 지난 2월 12일 도고관광호텔에서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의 에너지가격제도개선 워크샵에서 李福載박사가 발표한 논문을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 註〉

# 油價管理制度 개선방안

## 1. 油價管理制度 현황

### (1) 개 요

- 油價관리 제도는 自由油價制, 運動化제도, 統制油價制 그리고 이를 방식을 石油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折衷的 油價制로 대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애식을 채택하고 있음.
- 세트油와 溶劑의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나프타價格은 日本 C & F에 매월 연동되고 있고, 기타 石油製品의 가격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음.
- 통제하의 石油製品에 대하여는 정유회사 판매가격, 대리점가격 및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구분하여 각 유통 단계별로 전국 單一최고 판매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고시함.

- 정부가 대부분의 石油製品 가격을 통제함에 따라서 정유회사의 손익에 직접관여하게 되고 石油製品 수출입을 규제.

### (2) 油價구조

- 精油5社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판매복합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정책, 사회정책, 에너지 소비정책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가격을 결정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生産財로 사용되는 B-C油는 평균복합단가보다 낮게 가격이 결정되고, 휘발유는 그 소비억제를 위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됨, 輕油, 燈油등 소비재는 휘발유가격보다는 낮지만, 평균복합단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됨.

李 福 載

〈자원경제학박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

• 工場渡 가격

-이는 原油代관련비용과 정제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原油代관련비용은 原油費와 原油도입 금융비로 구분됨. 原油費는 原油가격(FOB), 原油수송비, 국내도착 부대비(방위세, 무역특례자금, L/C개발비등), 關稅 및 石油事業基金으로 구성되며, 原油도입 금융비는 原油도입 유전스사용에 따른 短期外貨借入金融費임.

-정제비는 石油製品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품구조비용과 수송저유비, 일반판리비 및 판매비 그리고 영업외 비용을 포함. 제조비용 및 일반판리비에 속하는 주요비용은 노무비, 水道光熱費,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전력비, 공과금등임. 수송저유비는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제품 수송비와 貯油費用임. 현재 油價에 반영하는 정제비의 결정은 精油5社의 결산자료에 나타난 정제비를 가중평균하여 이루어짐.

-油價결정시의 精油社 稅後이익수준은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10%.

-原價 구성상의 주요특징은 原油代의 비중이 매우 커서 그 관련비용이 공장도가격의 90%정도 차지하며, 정제비의 비중은 작다는 것임. 原油導入費用은 대외결제일의 달러貨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불하므로 환율변동이 油價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큼.

-精油社가 原油를 선적한 후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약 100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동안의 운전자금은 자기자금이나 국내여신으로 충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유전스의 사용이 불가피함. 국내 精油社는 이 큰 규모의 유전스금융을 모두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함. 또한 유전스는 外貨表示債務이므로 原油도입시와 결제시의 환율이 다를 경우 그 환차액을 부담.

• 精油會社 판매가격

-이는 공장도가격에 제품 수송정비, 특별소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결정됨.

-製品 수송비는 전국적으로 일정액이 부과되어 제품 가격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해짐. 따라서 정유공장 가까이에 위치한 소비자가 멀리있는 소비자를 보조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產業立地 결정에 있

어서 수송측면에서의 경제적 최적화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음.

• 대리점 판매가격 및 최종소비자 가격

-대리점 판매가격은 精油社 판매가격에 대리점마진 및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되며, 최종소비자 가격은 대리점 판매가격에 주유소의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됨.

(3) 油價管理制度의 주요 특징

• 정부에 의한 전국 單一最高價格制

-나프타, 제트유, 용제를 제외한 모든 石油製品에 대하여 각 통제단계별로 전국적으로 단일의 최고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고시함.

• 油價算定方式

-各 原價 항목별로 5개 정유회사의 비용을 가중평균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油價를 산정.

-이렇게 산정된 原價를 기초로하여 정유사의 수익을 결정함.

• 精油社의 이익관리

-精油5社의 이윤은 자기자본에 대하여 稅後 10%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하는 이윤이나 결손은 연말 정산시 환수하거나 보전함.

• 基金과 稅制의 정책적 운영

-국제 原油가격의 변동과 환율변동등에 의한 国내油價 변동요인을 石油事業基金과 관세를 이용하여 최소화 시킴으로써 국내油價를 상당기간 동안 일정수준으로 유지.

-특별소비세의 부과를 통하여 에너지소비정책적인 측면에서 石油製品間의 가격구조를 조정함(例 : 휘발유에 대한 高率의 특소세 부과).

-산업정책적인 고려에서 나프타를 低價로 공급하기 위하여 石油事業基金 및 關稅의 환급제도 실시.

## 2. 현행 油價管理制度의 문제점

(1) 국내 石油產業의 구조변화로 인한 현행管理制度의 부적합

• 現制度는 1960년부터 1983년경까지의 精油社의 原油 도입→단순정제→제품의 공급 체계하에서 적합한 것임.

• 현재와 같이 開發原油의 도입, 임가공, 重質油 脱黃 및

分解, 그리고 내수분에 대한 제품 수출입 비중이 점증하는 상황하에서는 부적합.

### (2) 原價算定 과정의 부적합

- 原價算定時 各 精油社別 청유능력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규모경제의 차이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인 단순 가중평균에 의해 원가를 도출함.
- 경영형태(내수전용, 內外需겸용, 石油化學시설 유무, 潤滑 基油시설유무 등)를 감안하지 않은 精油部門 원가 항목체택.

### (3) 告示價格 수준의 부적절

- 정부 고시가격이 포함해야 할 표준원가, 시설확충을 위한 정유사 財源留保, 공개기업의 배당유보 등의 소요가격수준을 제시치 않음.
- 石油製品 가격구조의 왜곡
  - 동일 용도하의 제품가격을 비교해 볼 때, 撥發油는 輕油와 부탄에 비해서 그 가격수준이 높은데 이는 주로 특별소비세의 차등부과에 기인함. LPG는 撇發油와의 대체관계 및 LNG價格과의 형평문제로 인하여 高價유지.
  - 重質油 分解 施設투자의 주요 유인이 되는 B-C油 가격과 輕油가격의 차이를 분석해 볼 때, B-C油 가격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와같이 왜곡된 油價구조는 불필요한 시설투자(나프타를 이용한 LPG 제조시설)를 유발하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며, 高價製品(撗發油, LPG)의 수입성향과 低價製品(나프타)의 생산기피 현상이 나타남, 그리고 임가공시 高價제품은 국내에 잔류시키고 低價제품은 수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비효율성을 초래.

### (4) 精油社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저하시키는 油價管理

- 정부에 의한 石油製品別 최고가의 고시는 원가절감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精油社들의 판매수입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게 하며, 이에 더하여 精油社의 세후이윤이 자기자본에 대하여 10%로 한정되어 있어서 精油社의 이윤에도, 자기자본이 불변인 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결국 原價節減이 精油社의 판매수익이나 이윤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함으로써 효

율적인 경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 자기자본에 대한 精油社 세후이윤의 10% 규제

- 이 규제는 料率 베이스(rate base)인 자기자본의 증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함(Averch-Johnson Effect). 자기자본의 증가는 시설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도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잉 설비투자의 가능성이 있음.
- 자기자본 증가의 또다른 방법은 當期 순이익을 잉여금에 포함시키는 것임. 이는 규제 이윤율(10%)로複利의 이윤을 精油社에 갖다주는 투자효과가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방법이 됨. 그 결과 國家의 에너지정책상 절실히 요구되지만 위험도가 큰 사업,例로서 海外油田개발, 重質油 분해시설, 脱黃시설,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精油社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할 가능성성이 있음.

- 본 규제는 한 精油社의 이윤증가가 他社의 이윤감소(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외부효과(Externality)를 유발함.

### • 原價의 항목별 통제는 精油社에 의한 각 원가항목의 절감노력의 필요성을 감소시켜서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함.

(5) 국내 精油5社 비용의 가중평균에 의한 原價算定은 한 정유사의 비용증감이 가중평균비용의 증감을 통한 他社의 이윤증감을 초래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또한 유발함.

(6) 石油事業基金과 관세를 활용하여 国內有價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미래의 油價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형성에 이 기금과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임. 즉 이 기금과 關稅 없이도 油價는 장차 상승할 것을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면 그 운영의 타당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임.

(7) 정부에 의한 油價규제시 그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려움. 그 주요 이유로서 규제의 바탕이 되는 제반 자료의 객관성 결여와 精油5社 비용의 평균에 따른 왜곡을 들 수 있음. 따라서 객관적인 油價결정이 곤란함.

## 3. 油價管理制度의 개선방향

(1) 이상에서 살펴본 油價管理의 제반 問題는 근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油價규제에 기인함. 따라서

일차적으로 정부에 의한 油價 규제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하며, 다음으로 油價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야 함.

### (2) 油價規制 범위 축소

- 原價의 항목별 통제를 지양하고 최종소비자 가격위 주로 통제
- 특히 정유사 이윤의 자기자본에 대한 10% 규제를 해제해야 함.
- 정산제는 폐지되어야 함
- 油價의 객관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油價調整審議委員會」설치가 요망됨.

### (3) 油價규제의 단계적 해제

- 가격규제 해제는 시장경쟁이 뚜렷이 존재하는 제품부터 실시함이 타당함. 정부는 이미 시장경쟁 여부를 고려한 후 제트油와 나프타를 가격규제에서 해제 하였음. 이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시장경쟁도를 검토하여 규제지속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임.
- 시장경쟁도에 대한 精油產業 경영층의 일반적인 견해는 B-C油, 輕油, 撥發油의 시장경쟁도는 높다는 것임. 이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시장도 매우 잘 발달 되어 있어서 대규모 수출입도 가능함. 따라서 가격규제가 해제되었을 때 국내 수급불균형시 가격의 급격한 脫落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시장경쟁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精油會社·유통업계의 일반적 견해는 서울과 주변의 위성도시, 그리고 釜山처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경쟁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임.

지역별 경쟁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그러나 우선 첫 단계로 경쟁이 심한 京仁지역과 釜山지역에 대해서 앞의 3개 제품의 가격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보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이렇게 부분적(제품별, 지역별) 규제해제를 실시할 경우, B-C油價格과 撥發油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輕油價格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國際市場 가격구조에 접근하는 것임.
- 지역별 가격차이가 발생할 것이나 이것 때문에 수급불균형 발생이 예상되지는 않음. 가격규제가 없는 京仁지역과 釜山지역의 가격이 타지역에 비하여 낮다해서 가장 큰 石油시장인 이 지역에서 自社의 시장점유율을 줄일 정유회사는 없음. 精油產業은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율은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줌. 따라서 시장확보는 精油이 윤증대의 최우선 전략임.
- 동시에 규제해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개방해야 할 것임.
- 이와같이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결정은 精油會社로 하여금 경영합리화를 추구토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옴. ◎

